

소 장

원고 박 원 석

서울 종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하승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0 서정빌딩 4층

(TEL: 587-9400, FAX: 587-9373)

피고 정보통신부장

전파사용료부과처분취소

청 구 취 지

1. 정보통신부장이 1999. 6. 30. 원고에게 부과한 전파사용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무선휴대통신 가입자(전화번호)로서 전파법 제74조의5 제1항에 의한 전파법시행령 제119조의11 제1호, 별표 11에 의하여 1999. 6. 30. 전파사용료 3,000원을 부과받은 자입니다.

2. 전파사용료의 법적 성격

가.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 당해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고(제74조의5 제1항), 이 사용료는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진흥을 위하여 사용되며(동조 제3항),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동조 제4항), 이를 체납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동조 5항)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전파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 전파사용료는 '조세'나 '사용료'라 볼 수 없습니다. 사용료라면 그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함에도 전파사용료는 일정액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무선통신의 이용자들은 전파사용료와 별도로 그 사용시간에 비례한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사용료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또한 전파사용료는 전파진흥사업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을 위하

여 무선국시설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무선국의 시설자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점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도 아님이 분명합니다.

다. 따라서 전파사용료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만 부과되는 특별분담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전파진흥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과제에 대하여 직간접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이동휴대전화의 단말기의 소지자(무선국의 시설자)'라는 특정 집단에만 부과되며, 이는 전파진흥이라는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것으로서 특별분담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헌재 1999. 1. 28. 97헌가8. 위헌판결, 1999. 5. 27. 98헌바70. 헌법불합치결정).

3. 전파사용료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전파법 제74조의 5의 위헌성

이와 같이 전파사용료는 특별분담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분담금은 재정적인 목적인 전면에 나서는 재정적 공과금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재정적 공과금을 규정한 전파법 제74조의5는 헌법 제37조 제 1항 후단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입법에 해당합니다(김성수, 교통안전기금분담금의 법적성격,

법률신문 1999. 3. 22.). 그러나 위 전파법 제74조의 5는 아래에서 보듯이 위임입법의 한계의 위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 법률 조항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전파사용료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나. 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위반

(1) 전파법은 전파사용료의 부과에 대하여 규정하면서도, 전파법 제74조의5 제2항에 의하여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시행령 제119조의11은 그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입법화된 정책을 집행하거나 적용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아니되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여 위임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 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3)전과사용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은 전과사용료의 납부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은 그 내용이 법률로써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세유사적 성격을 가지는 전과사용료는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는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헌재 1999. 1. 28. 97헌가8 위헌판결).

(4) 그런데 전과법 제74조의5 제2항은 그 부과기준 등을 스스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부과기준의 대강이나 그 상한, 부과대상자별 부과액의 차등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납부의무자들이 그 내용의 대강이 어떤 것이 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사용료 부과와 본질적 부분 모두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전과법의 규정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에 해당하며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법률유보(의회유보)원칙의 위반

또한 전과사용료의 금액은 납부의무자의 범위나 그 징수절차와 함께 전과사용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은 수많은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당연히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법은 그 금액을 어떤 상한이나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도 없이 만연히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3,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보장 측면에서 기본권실현에 관계되어 있는 전과사용료 금액의 결정을 국회 스스로가 하지 아니한 전과법 제74조의5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이의방법 등의 불고지

한편, 전파법 시행규칙인 1997. 5. 1. 정부통신부장관령 제37호 제200조 (1997. 7. 25.)에 따르면 전파사용료의 부과처분에는 그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함께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과처분이 전파법 시행령 제11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 병기되어 부과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에 따른 이의방법 등의 고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부당하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의 이익을 침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부과처분에 있어서 필요한 이의방법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위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4. 결론

정보통신부장의 전파사용료부과처분은 그것이 위헌인 법률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법처분이며, 행정절차법의 강행규정에 반한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장의 1999. 6. 30. 원고에 대한 전파사용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강제1호증

전파사용료 납입고지서

1. 그밖의 입증방법은 추후 소송진행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송달료

1999.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훈

서울행정법원 귀중